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과 이행의 의미

이 유 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에너지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전 세계의 자연재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설비의 확대와 기존 에너지 공급방식의 획기적 변화 없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오랫동안 굳어져 온 경직적 에너지 운영 시스템은 급격한 에너지 여건변화의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공기업이 주도하는 규제위주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조차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에너지 공급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 장거리 수송이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리고 가격규제와 함께 시장진입 규제는 유연한 에너지자원의 수용을 제한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에너지 운영 시스템의 전환과 관련 정책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 전기사업법은 전국단위에서 전력 운영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분산에너지는 중소규모의 에너지자원으로 배전망에 접속하거나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도 생산자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정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운영체계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친환경 발전설비로 인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제어하여 안정화시킬 것인가도 관건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행의 핵심 사항일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적 에너지 수급 균형에 중점을 두고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한편, 신규 수요를 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우선 소규모 분산에너지자원을 모아서 하나의 발전설비처럼 활용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분산에너지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게 하고, 수요처의 입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함으로써 계통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결국 에너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소비자를 유인하여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

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설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에너지의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요금 결정과 거래 유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배전망의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 분산에너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가격신호에 의해 지역적으로 분산화되도록 계통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적 수급균형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그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바로 시장의 가격기능 회복과 에너지원별 칸막이 규제의 철폐이다. 이제 대규모 발전설비를 활용한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시스템 운영과 대형 공기업의 독점 체제는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여 시장의 수급에 의한 가격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모델의 창출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아직 전기요금이 낮고 분산에너지의 공급단가가 높으며, 융복합적 사업모델의 창출이 규제로 막혀있다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공급비용의 요금반영은 물론 수급에 의한 가격기능이 회복되어야 하고, 유연성 에너지원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